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916호

서울특별시 광진구 50대 정신건강검진 ·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50대 정신건강검진 ·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㊞

2016년 5월 23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 50대 정신건강검진 ·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50대 구민에 대한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50대 정신건강검진 · 상담(이하 "정신건강검진"이라 한다.)"이란 50대를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.

2. "정신건강검진비(이하 "검진비"라 말한다.)"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정신건강검진·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.
3. "정신건강검진기관(이하 "검진기관"이라 한다.)"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·상담을 위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.)은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 · 시행하고, 정신건강 및 상담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정신건강검진의 사업방향,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
2.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

제4조(검진기관의 선정)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은 선정기준 등을 확인하여 절차에 따라 선정된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.

제5조(지원대상)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50대 구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,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6조(지원내용)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)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서식의 청구서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
1. 검진기관명,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
2. 지원 대상자 이름, 생년월일, 주소, 진료내역
3. 검진비
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한다.

제8조(지역협의체의 구성·운영)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,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검진 지원 지역협의체(이하 "지역협의체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는「정신보건법」제2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초정신보건심의(심판)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.

제9조(지역협의체의 기능)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
2.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
3.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,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
4.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)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자원봉사자(자원봉사자 단체를 포함한다)를 모집·활용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환수조치 등)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검진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, 허위청구에 따라 검진기관에 검진비가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「지방세기본법」에 규정된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.

③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12조(수당) 지역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 (앞면)

50대 정신건강검진·상담지원사업 검진비 청구서

(제7조 관련)

청 구 기 관(입력 또는 명판으로 대체 가능)			
검진기관명			
요양기관기호			
대표자			
소재지			
전화번호			
지 급 계 좌			
은행명		예금주	
지급계좌번호			

청 구 내 역					
구분		총 방문횟수	1인당 검진료지원액(A) (단위 : 원)	대상자수(B) (단위 : 명)	청구 금액 (A×B) (단위 : 원)
계(건강보험환자+의료급여수급자)					
건강보험환자		소계			
		1회차 방문			
		2회차 방문			
		3회차 방문			
의료급여수급자	2종	소계(2종 수급자)			
		1회 방문			
		2회차 방문			
		3회차 방문			
	1종	소계(1종 수급자)			
		1회 방문	-		
		2회차 방문	-		
		3회차 방문	-	-	

우리 기관에서 ___년 ___월 ___일부터 ___년 ___월 ___일(말일)까지 실시한 50대 정신건강검진 · 상담 지원사업의 검진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.

※ 해당 월의 검진 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

붙임: 세부 청구 내역(뒷면)

년 월 일

대표자: (서명)

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장 귀하

(뒷면)

세부 청구 내역

50대 정신건강검진•상담지원사업 청구내역													
연번	① 진료 기관	② 상담 횟수	③ 상담 일자	④ 대상자 인적사항					⑤ 보험 유형 (의료보험 의료급여)	⑥ 검진 결과	⑦ 추정 진단명	⑧ 처리결과 (1~6): 지역정신 건강증진 센터 연계 등	⑨ 비고
				환자 성명	생년 월일	성별	주소지 (구명)	전화 번호					
1													
2													
3													
4													
5													
6													
7													
8													
9													
10													
11													
12													
13													
14													
15													
16													
17													
18													
19													
20													